

교육성과관리센터 규정

제정 2017. 8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육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제2조(조직과 기능) ① 교육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)는 학칙 제1조 (목적)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양·전공·융합·비교과교육과정의 연구, 평가 및 환류 등 교육의 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부와 교육성과관리부를 둔다.(개정 2018. 12. 12, 2020. 3. 16.)

② <삭제 2020. 3. 16.>
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1. 본 대학교의 핵심역량, 교육단위부서의 전공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
2. 본 대학교의 교육 환류체계 관리
3.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의 개발과 관리
4. 호서교육인증제 연구, 계획수립 및 운영
5. <삭제 2020. 3. 16.>
6. <삭제 2020. 3. 16.>
7. <삭제 2020. 3. 16.>
8.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 자체평가 수행
9. 센터 운영에 관한 통계분석, 기록물, 센터 홈페이지 관리
10. CanDo마일리지 및 CanDo장학제도 운영
11. CanDo역량인증 운영
12.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, 예·결산 보고
13. 센터 소관 위원회 운영
14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15.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학기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3조 삭제<2020. 3. 16.>

제4조 삭제<2020. 3. 16.>

제5조(교육성과관리위원회) ① 본 대학교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교육혁신처장 직속 기구로 두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 12. 12, 2020. 3. 16.)

1. 위원장은 센터장, 부위원장은 부센터장으로 한다.
2. 센터 교육성과관리부 전임교수, 단과대학 부학장, 교무부처장, 인재개발부처장, 산학협력부 단장, 교수학습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1인의 간사를 둔다.
3. 내·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4.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육혁신처장이 임명한다.
5.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6.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2회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<삭제 2020. 3. 16.>

- ③ <삭제 2020. 3. 16.>
- ④ <삭제 2020. 3. 16.>
- ⑤ <삭제 2020. 3. 16.>
- ⑥ <삭제 2020. 3. 16.>
- ⑦ <삭제 2020. 3. 16.>
-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신설 2020. 3. 16.)
 1.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
 2. 본 대학교의 교육 질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교육 환류체계 선진화 방안
 3. 호서교육인증제 고도화 방안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
 4. CanDo역량인증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
 5. 기타 본 대학교의 교육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

[제목변경 2020. 3. 16.]

제5조의 2 (교육과정연구위원회) 본 대학교 교양·전공·융합·비교과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정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센터 교육과정연구부 전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.
2.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육혁신처장이 임명한다.
3. 교양·전공·융합·비교과교육과정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위원회 산하 분과를 둘 수 있다.
4.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2회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[본조신설 2020. 3. 16.]

제6조(지원부서와 관계) ① 센터는 교육과정연구 및 교육성과관리를 위하여 교양·전공·융합·비교과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담당 부서에 연간 운영계획, 성과분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환류체계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도록 요구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② 교양·전공·융합·비교과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담당 부서는 센터에서 정한 준칙에 맞게 센터의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제7조 삭제<2020. 3. 16.>

부 칙(2017. 8. 28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2. 12)

①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교무처’을 ‘교육혁신처’로, ‘학사팀장’을 ‘교육혁신팀장’으로 한다.

부 칙(2020. 3. 16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